

안전보건관리규정 8차개정 전·후 대비표

현 행 (7차)	개 정(안)	개정 사유
<p>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p> <p>3. “중대재해“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나. 3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환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p> <p>17. “산업안전보건위원회”란 회사 또는 수급업체별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p> <p>19. “KOSPO 안전경영위원회”란 회사 및 협력사, 근로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말한다.</p> <p>20. “사업주 협의체”란 사업소장과 수급업체 현장소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p> <p>21. “안전근로협의체란”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사업장에서 회사·수급업체 노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말한다.</p> <p>22. “신작업안전시스템“이란……………</p> <p>23.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법, 영, 규칙은 ……………</p>	<p>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p> <p>3. “중대재해“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나. 3개월 이상의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p> <p>17. “산업안전보건위원회”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 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협의체를 말한다.</p> <p>19. “안전경영위원회”란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2조에 따라 인명 및 재난 안전관리 등 안전경영에 대한 사항을 자문하고 심의하기 위해 ……………</p> <p>20.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란 법 제64조에 따라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회사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회사와 수급인을 구성으로 하는 협의체를 말한다.</p> <p>21. “안전근로협의체란”란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2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사업장 안전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회사·수급업체 노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말한다.</p> <p>22. (2022.12.00 삭제)</p> <p>23.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에 관한 규칙은 …</p>	<p>- 산업안전보건법(‘22.8.18) 기준으로 용어 정리</p> <p>- 용어정리 ◦ KOSPO 안전경영위원회 → 안전경영위원회</p> <p>- 용어정리 ◦ 사업주 협의체 → 안전 및 보건협의체</p> <p>- 용어정리 ◦ 공공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의거</p> <p>- 용어정리 ◦ 신작업안전시스템 용어 삭제</p> <p>- 용어정리</p>

현 행 (7차)	개 정(안)	개정 사유
<p>제 8 조 (안전경영책임계획 수립 및 이행) ① 본사 안전보건주관부서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안전경영책임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부 주무부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021. 02. 25 개정)</p> <p>② 본사 처·실 및 사업소는 제1항을 근거로 각 조직에 적합한 안전보건경영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단, 사업소의 안전보건경영 추진계획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p> <p>③ 본사 처·실 및 사업소에서 수립한 안전보건경영 추진계획을 근거로 각 라인부서는 부서에 적합한 안전보건 추진계획과 목표를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에는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년도 안전경영활동 실적 및 평가 2.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안전경영활동 계획 3. 안전보건조직 구성·인원 및 역할 4.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시설 보강 및 투자 예산 5.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감축 목표 6. 그 밖에 안전 및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p>⑤ 본사 안전보건 주관부서장은 매년 2월말까지 당해 연도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주요내용 (2021. 02. 25 신설)</p>	<p>제 8 조 (안전경영책임계획 수립 및 이행) ① 본사 안전보건주관부서장은 매년 12월말까지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주무부처와 협의를 거쳐 다음 연도 안전경영책임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2022.12.00. 개정)</p> <p>② 안전경영책임계획 수립시에는 이사회 최종 보고 전 KOSPO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경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근로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2022.12.00 신설)</p> <p>② 사업소는 제1항에 따라 각 조직에 적합한 연간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단, 사업소의 연간 안전보건관리계획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2022.12.00 개정)</p> <p>③ 본사 안전보건주관부서장은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이행사항을 반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이행 실적을 주무기관의 장에게 점검받아야 한다. (2022.12.00 신설)</p> <p>④ 제1항에 따른 안전경영책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022.12.00 개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년도 안전경영 활동 실적 및 평가 2. 안전경영 방침 및 안전경영 활동 계획 3. 안전 조직 구성·인원 및 역할 4. 안전에 관한 시설 및 예산 5.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6.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감축목표 (2022.9.30.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개정사항 및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개선 권고사항 반영 -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개선 권고사항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경영책임계획 이행점검 및 제출시기에 대한 내용 포함 -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용어 반영 -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개정사항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임보고서 작성시기 변경 : 2월말 → 1월말

현 행 (7차)	개 정(안)	개정 사유
	⑤ 본사 안전보건주관부서장은 매년 1월말까지 당해 연도 안전경영 책임계획의 주요내용 (2022.12.00 개정)	
제10조 (안전보건 조직 운영) ① 사업장을 총괄·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고, (2019. 12. 26 신설) ③ 라인조직의 안전보건업무 지원을 위해.....있다.	제10조 (안전보건 조직 운영) ① 회사는 사업장을 총괄·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고, (2022.12.00 개정) ③ 회사는 라인조직의 안전보건업무 지원을 위해.....있다. (2022.12.00 개정)	- 주어(이행주체) 명확화
제 12 조 (관리감독자) ② 관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7.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작업에서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 8.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 9.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작업에 사용하는 유해·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 10.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3(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작업시작 전 점검	제 12 조 (관리감독자) ② 관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7.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에서 정하는 작업에서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 (2022.12.00 개정) 8.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에서 정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 (2022.12.00 개정) 9.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에서 정하는 작업에 사용하는 유해·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 (2022.12.00 개정) 10.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3(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작업시작 전 점검 12. 회사 직원이 직접 작업하지 않고 제3자에게 도급하여 위탁한 경우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를 수급인의 관리감독자가	- 연결조항 수정 ◦ 시행령 별표 →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 도급인의 역할 명시

현 행 (7차)	개 정(안)	개정 사유
	이행하는지 점검·관리 (2022.12.00 신설)	(도급사업 기준)
<p>제 13 조 (안전관리자)</p> <p>③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 주관 2.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3.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4.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5.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지도 6.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p>제 13 조 (안전관리자)</p> <p>③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본 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022.12.00 개정) 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3.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2022.12.00 신설) 4.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5.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2022.12.00 신설) 8.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2022.12.00 신설) 9.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2022.12.00 신설) 10.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p>-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으로 문구 정리 (법령과의 정합성 보완) ◦ 3호, 7호, 8호, 9호 신설</p>

현 행 (7차)	개 정(안)	개정 사유
<p>제 14 조 (보건관리자)</p> <p>② 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保護具)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2.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3.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4.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료행위(단, 의료법에서 허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6. 그 밖에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측정 등 관리에 관한 사항 	<p>제 14 조 (보건관리자)</p> <p>② 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본 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022.12.00 신설) 2.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2022.12.00 개정) 3.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2022.12.00 신설) 4.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2022.12.00 개정) 5. 산업보건직의 직무(보건관리자가 「의료법」에 따른 의사에 한함) (2022.12.00 신설) 6. 해당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7.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 (보건관리자가 「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간호사에 한함) (2022.12.00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자주 발생하는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 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다. 부상·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라.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른 의약품의 투여 8.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9.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2022.12.00 신설) 	<p>-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으로 문구 정리 (법령과의 정합성 보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호, 3호, 5호, 9호, 10호, 11호, 12호, 13호 신설 ◦ 2호, 4호, 7호, 14호 개정 (구체적으로 명시 등)

현 행 (7차)	개 정(안)	개정 사유
	10.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2022.12.00 신설) 1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2022.12.00 신설) 12.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2022.12.00 신설) 13.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2022.12.00 신설) 14. 그 밖에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2022.12.00 개정)	
제 16 조 (안전관리자 등의 지도·조언) ①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가 안전 또는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건의하거나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경우에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19. 12. 26 신설)	제 16 조 (안전관리자 등의 지도·조언) ① (현행 유지) ② 회사는 안전보건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외부전문가의 평가·지도를 받을 수 있다. (2022.12.00 신설) ③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는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2022.12.00 신설)	-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으로 문구 정리 (법령과의 정합성 보완) ◦ 제2항: 시행령 제18조 제3항 등 ◦ 제3항: 시행령 제18조 제4항 등
제 17 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②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작업환경측정, 근로자 건강진단 시의 입회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여 5.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지도 6. 그 밖에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제 17 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②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 중지 요청 (2022.12.00 신설) 5. 작업환경측정, 근로자 건강진단 시의 입회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여 6. 직업성 질환이 증상이 있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실시 요청 (2022.12.00 신설) 7.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지도 8. 그 밖에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으로 문구 정리 (법령과의 정합성 보완) ◦ 4호, 6호 신설

현 행 (7차)	개 정(안)	개정 사유
<p>제 18 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등) ① 각 사업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설치·운영한다. 세부적인 운영사항은 별표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2019. 12. 26 개정)</p>	<p>제 18 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등) ① 회사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소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별표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2022.12.00 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으로 문구 정리 (법령과의 정합성 보완)
<p>제 20 조 (법정관리요원의 신고)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이하 ‘법정관리 요원’ 이라 한다.)로 선임하고자 할 경우 관련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정한 자는 관련 시행령 조항(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자격)에 해당하는 자격을 구비한 자로 하여야 한다.</p>	<p>제 20 조 (법정관리요원의 신고) ① 회사는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이하 ‘법정관리요원’ 이라 한다.)를 시행령에서 정한 수 이상으로 선임해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법정관리요원은 시행령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야 하며, 선임한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어(이행주체) 명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회사 ☞ 산안법에 따라 안전관리자 등의 선임에 관한 사항은 ‘사업주’ 의무임 -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으로 문구 정리 (법령과의 정합성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보고사항 추가 (시행규칙 제12조, 제23조)
<p>제 21 조 (안전·보건관리의 전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선임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가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p>	<p>제 21 조 (안전·보건관리의 전담) 회사는 선임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가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어(이행주체) 명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회사 ☞ 산안법에 따라 안전관리자 등에 관한 사항은 ‘사업주’ 의무임

현 행 (7차)	개 정(안)	개정 사유
<p>제 22 조 (경영검토) ① 본사 및 사업소 안전담당부서는 각 조직으로부터 안전보건 추진계획 이행사항을 제출받고 분석한 경영검토 결과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거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주관하는 안전보건경영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2019. 12. 26 신설)</p> <p>② 본사 안전보건 주관부서장은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안전경영책임 계획의 이행 실적을 종합하고 정부 주무부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021. 02. 25 개정)</p>	<p>제 22 조 (경영검토) <삭제> (2022.12.00 삭제)</p>	<p>-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 ISO45001) 사항으로 '안전보건경영매뉴얼'에 기재</p> <p>o 책임계획 이행실적 제출사항은 8조에 명시</p>
<p>제 23 조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① 본사 및 사업소의 안전 및 보건관리담당부서는 당해 연도 교육실적을 분석하고 차기 연도에 실시할 안전·보건교육 계획을 매년 말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2019. 12. 26 신설)</p> <p>③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은 정기교육, 채용 시의 교육, 작업내용 변경시의 교육, 특별교육,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으로 구분한다.</p>	<p>제 23 조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① 본사의 안전보건주관부서와 사업소의 안전보건담당부서는 당해연도 교육실적을 분석하여, 차기 연도에 실시할 안전·보건교육 계획을 매년 말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2022.12.00 개정)</p> <p>③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은 정기교육, 채용 시의 교육, 작업내용 변경시의 교육, 특별교육,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등으로 구분한다.</p>	<p>- 용어 일원화 및 문맥정리</p> <p>o 본사 : 안전보건주관부서</p> <p>o 사업소 : 안전보건담당부서</p> <p>o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시행주체는 건설업의 사업주로 남부발전 해당없음</p>
<p>제 24 조 (정기교육)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소속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019. 12. 26 신설)</p> <p>② 제1항의 근로자에게 교육하는 내용은 관련 법령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p>제 24 조 (정기교육)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소속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내용은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다. (2022.12.00 개정)</p> <p>② <삭제> (2022.12.00 삭제)</p>	<p>- 법적내용 명확화 (연결조항 명시) 및 문맥정리</p>

현 행 (7차)	개 정(안)	개정 사유
<p>제 25 조 (신규채용 시 교육)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담당업무 종사 전 업무와 관련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2019. 12. 26 신설)</p> <p>② 제1항의 근로자에게 교육하는 내용은 관련 법령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p>제 25 조 (신규채용 시 교육)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담당업무 종사 전 업무와 관련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내용은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다. (2022.12.00 개정)</p> <p>② <삭제> (2022.12.00 삭제)</p>	<p>- 법적내용 명확화 (연결조항 명시) 및 문맥정리</p>
<p>제 26 조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① 전입직원이나 수행업무가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2019. 12. 26 신설)</p> <p>② 제1항의 근로자에게 교육하는 내용은 관련 법령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p>제 26 조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전입직원이나 수행업무가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내용은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다. (2022.12.00 개정)</p> <p>② <삭제> (2022.12.00 삭제)</p>	<p>- 주어(이행주체) 명시, 법적내용 명확화 (연결조항 명시) 및 문맥정리</p>
<p>제 27 조 (특별교육) ①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시키거나 감독업무에 배치하고자 하는 경우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021. 02. 25 개정)</p>	<p>제 27 조 (특별교육)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시키거나 관리업무에 배치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내용은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다. (2022.12.00 개정)</p>	<p>- 주어(이행주체) 명시, 법적내용 명확화 (연결조항 명시) 및 문맥정리</p>
<p>제 28 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 일용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 일용자가 해당 사업장에 채용되기 전에 관련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다. (2019. 12. 26 신설)</p>	<p>제 28 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 일용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 채용되기 전에 관련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다. (2022.12.00 개정)</p>	<p>- 산업안전보건법 상 용어사용</p> <p>- 문맥정리</p>

현 행 (7차)	개 정(안)	개정 사유
<p>제 29 조 (물질안전보건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대상 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해당직무 투입 전에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2019. 12. 26 신설)</p> <p>3.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p> <p>② 제1항의 근로자에게 교육하는 내용은 관련 법령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p>제 29 조 (물질안전보건교육)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대상 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해당업무 투입 전에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하며, 교육내용은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다. (2022.12.00 개정)</p> <p>3. 대상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p> <p>② <삭제> (2022.12.00 삭제)</p>	<p>- 주어(이행주체) 명시, 법적내용 명확화 (연결조항 명시) 및 문맥정리</p>
<p>제 30 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직무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당해 연도 직무교육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2019. 12. 26 신설)</p>	<p>제 30 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직무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내용은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다. (2022.12.00 개정)</p>	<p>- 법적내용 명확화 (연결조항 명시) 및 문맥 및 용어 정리</p>
<p>제 31 조 (안전보건교육강사) ① 안전보건교육 강사에 대한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19. 12. 26 신설)</p> <p>2. 관리감독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자격을 갖춘 강사를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p>② 회사는 안전보건교육을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위탁교육을</p>	<p>제 31 조 (안전보건교육강사) ① 안전보건교육 강사에 대한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19. 12. 26 신설)</p> <p>2. 관리감독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자격을 갖춘 강사를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 (2022.12.00 개정)</p> <p>② 회사는 안전보건교육을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위탁교육을(2022.12.00 개정)</p>	<p>- 문맥정리</p>

현 행 (7차)	개 정(안)	개정 사유
<p>제 32 조 (도급사업 안전보건교육 지원) ① 도급사업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지원을 위해 교육장소, 교육자료, 강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2019. 12. 26 신설)</p> <p>② 발주부서 공사감독자는 도급사업으로 투입되는 근로자에 대해 신규 채용시에 준해서 1시간 이상 교육하여야 하며 교육내용은 사업장의 시설 개요, 해당 작업장 안전보건 위험정보, 비상시 대응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 단, 유해 또는 위험작업에 투입되는 근로자는 특별교육에 준해서 2시간 이상 교육하여야 한다.</p>	<p>제 32 조 (도급사업 안전보건교육 지원) ① 회사는 도급사업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지원을 위해 교육장소, 교육자료, 강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2022.12.00 개정)</p> <p>② 도급주관부서는 신규 투입되는 근로자에 대해 1시간 이상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교육내용은 사업장의 시설개요, 해당 작업장의 안전보건 위험정보, 비상시 대응요령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단, 유해 또는 위험작업에 투입되는 근로자는 특별교육에 준해서 2시간 이상 교육하여야 한다. (2022.12.00 개정)</p>	<p>- 주어(이행주체) 명시 및 문맥정리</p>
<p>제 33 조 (방문객 안전보건교육) ① 방문객을 사업장에 출입시키고자 할 경우 영접 담당부서는 최우선적으로 사업장의 시설 개요, 안전보건 위험정보, 비상시 대응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 (2019. 12. 26 신설)</p>	<p>제 33 조 (외부방문객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소는 사업장에 외부 방문객을 출입시키는 경우 방문객에게 사업장의 시설개요, 해당 작업장의 안전보건 위험정보, 비상시 대응요령 등을 교육하거나 안내하여야 한다. (2022.12.00 개정)</p>	<p>- 주어(이행주체) 명시 및 문맥정리</p>
<p>제 34 조 (기록·보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일지(또는 교육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수료증이나 교육확인서 등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2019. 12. 26 신설)</p>	<p>제 34 조 (기록·보존) 회사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일지(또는 교육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수료증이나 교육확인서 등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2022.12.00 개정)</p>	<p>- 주어(이행주체) 명시 및 문맥정리</p>

현 행 (7차)	개 정(안)	개정 사유
<p>제 35 조 (교육성과 측정)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교육종료 시 설문·시험 등으로 교육성과를 측정하여, 차기교육에 반영하여야 한다.</p>	<p>제 35 조 (교육성과 측정) 회사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 종료 시 설문·시험 등을 통해 교육성과를 측정하여, 차기교육 계획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2022.12.00 개정)</p>	<p>- 주어(이행주체) 명시 및 문맥정리</p>
<p>제 36 조 (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2019. 12. 26 신설)</p>	<p>제 36 조 (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2022.12.00 개정)</p>	<p>- 주어(이행주체) 명확화 ◦ 관리감독자 → 회사 ☞ 산안법 제34조에 따라 법령 요지 게시 의무는 '사업주' 임</p>
<p>제 37 조 (근로자대표의 통지 요청) 근로자대표는 사업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2019. 12. 26 신설)</p>	<p>제 37 조 (근로자대표의 통지 요청) 근로자대표는 회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2022.12.00 개정)</p>	<p>- 용어 통일 ◦ 사업주 → 회사</p>

현 행 (7차)	개 정(안)	개정 사유
<p>제 38 조 (근로자의 안전권리) 모든 근로자는 안전할 권리가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2019. 12. 26 신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작업장 안전시설에 대한 개선 2.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료수집 및 개선 3.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의견 제시 4. 노동강도와 작업방식 개선 	<p>제 38 조 (근로자의 안전권리) 모든 근로자는 안전할 권리가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2019. 12. 26 신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작업장 안전시설에 대한 개선 2.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료수집 및 개선 3.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의견 제시 4. 노동강도와 작업방식 개선 <p>② 모든 작업은 2인 1조 시행을 원칙으로 하며, 특히 근속기간 6개월 미만의 근로자는 단독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022.12.00 신설)</p> <p>③ 회사는 폭염과 한파 등에 의한 기상상황으로 인해 작업자의 건강 보호가 필요한 경우 야외작업 제한, 근무시간 조정 및 충분한 휴식 시간 보장 등 적절한 조치를 시행하고 해당 작업자에게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 (2022.12.00 신설)</p>	<p>-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 반영</p> <p>◦ 2인 1조 작업시행 및 근속기간 6개월 미만 근로자 단독 작업금지, 폭염·한파 등 이상 기후 발생 시 작업중지 등에 대한 내용 포함</p>

현 행 (7차)	개 정(안)	개정 사유
<p>제 40 조 (사전 안전검토·심의제) ① 공사·구매·용역 설계부서는 모든 공사·구매·용역사업 추진시 안전성 등에 대하여 본사 및 해당 사업소 안전부서의 사전 검토·승인결과를 반영하여 계약부서에 의뢰하여야 한다.</p> <p>② 사전 안전검토·심의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p>	<p>제 40 조 (안전분야 사전검토제) ① 공사·용역·구매를 발주하는 부서는 해당사업 추진 시 안전담당부서와 안전분야에 대한 사전 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계약을 의뢰하여야 한다. (2022.12.00 개정)</p> <p>② 안전분야 사전검토제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022.12.00 개정)</p>	<p>- 용어 현행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 안전검토·심의제 → 안전분야 사전검토제 <p>☞ 문서번호: 안전(공정안전)-12856 「안전분야 사전검토제 체크리스트 개선(안)」 의거</p>
<p>제 41 조 (안전보건표지 설치 및 부착) ① 관리감독자는 유해·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서의 근로자의 안전보건 의식 고취를 위하여 경고, 지시, 안내, 금지 등의 안전보건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2019. 12. 26 개정)</p>	<p>제 41 조 (안전보건표지 설치 및 부착) ① 회사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시설·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안전보건표지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2022.12.00 개정)</p>	<p>- 주어(이행주체) 명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감독자 → 회사 <p>☞ 산안법 제37조에 따라 안전 보건표지 설치·부착의 의무는 ‘사업주’ 임</p> <p>- 산업안전보건법(‘22.8.18) 기준으로 정리</p>
<p>제 42 조 (안전조치)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19. 12. 26 개정)</p> <p>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굴착, 채석, 하역,.....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부터 3항까지 시행해야 하는 안전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령 및 규칙, 작업안전보건수칙 등으로 정한다.</p>	<p>제 42 조 (안전조치)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22.12.00 개정)</p> <p>② 회사는 굴착, 채석, 하역,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③ 회사는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22.12.00 개정)</p> <p>④ 제1항부터 3항까지 시행해야 하는 안전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및 작업안전보건수칙 등으로 정한다. (2022.12.00 개정)</p>	<p>- 주어(이행주체) 명확화 및 용어 통일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회사 <p>☞ 산안법 제38조에 따라 안전 조치의 의무는 ‘사업주’ 임</p>

현 행 (7차)	개 정(안)	개정 사유
<p>제 43 조 (보건조치) ① 관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2019. 12. 26 신설)</p> <p>② 관리감독자는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과 관련하여, 근로자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및 열사병 예방 등에 노력해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행해야 하는 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령 및 규칙, 작업안전보건수칙 등으로 정한다.</p>	<p>제 43 조 (보건조치)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2022.12.00 개정)</p> <p>② 회사는 미세먼지 대응, 온열·한랭질환 예방 등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22.12.00 개정)</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행해야 하는 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및 작업안전보건수칙 등으로 정한다. (2022.12.00 개정)</p>	<p>- 주어(이행주체) 명확화 및 용어 통일화</p> <p>- ‘공공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기준으로 문구 정리 ◦ 지침 제14조(안전조치) 의거</p>
<p>제 44 조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① 회사의 모든 임·직원 및 도급업체 근로자는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019. 12. 26 신설)</p>	<p>제 44 조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① 회사의 모든 임·직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는 제42조와 제43조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022.12.00 개정)</p>	<p>- 산업안전보건법상 용어 사용</p>
<p>제 45 조 (위험신고 제도 운영) ① 우리 회사에 출입하는 모든 근로자는 사업장에 위험한 시설, 장비, 아차사고, 불안전행동 작업자에 대하여 위험신고를 할 수 있다. (2019. 12. 26 신설)</p> <p>② 위험신고 사항이 접수되었을 경우 해당 관리감독자는 즉시 원인을 파악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일일 공정안전회의에 보고하고 의견을 받아 조치하여야 한다.</p> <p>③ 위험 신고자와 적극적으로 개선 조치한 자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p>	<p>제 45 조 (위험신고 제도 운영) ① 회사에 출입하는 모든 근로자는 사업장의 위험한 시설, 장비 및 아차사고와 불안전한 행동을 한 작업자 등에 대하여 위험신고를 할 수 있다. (2022.12.00 개정)</p> <p>② 위험신고 사항이 접수되었을 경우 해당 관리감독자 및 담당부서는 즉시 원인을 파악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2022.12.00 개정)</p> <p>③ 회사는 위험을 신고한 자와 적극적으로 개선조치한 자에 대해 별도로 포상할 수 있다. (2022.12.00 개정)</p>	<p>- 주어(이행주체) 명확화 및 문맥정리</p> <p>- 주어(이행주체) 명시</p>

현 행 (7차)	개 정(안)	개정 사유
<p>제 46 조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①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는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19. 12. 26 신설)</p> <p>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고객의 폭언 예방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매뉴얼을 만들어서 비치하여야 하며, 고객 응대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관련 법령 및 규칙에 의거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③ 고객 응대 근로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관리감독자에게 제 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고객 응대 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p>	<p>제 46 조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① 회사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22.12.00 개정)</p> <p>② 회사는 폭언등으로 인한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매뉴얼을 만들어서 비치하여야 하며,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관련 시행령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22.12.00 개정)</p> <p>③ 근로자는 회사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회사는 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2022.12.00 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어(이행주체) 명시 및 문맥 정리 -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으로 문구 정리 (법령과의 정합성 보완) - 주어(이행주체) 명확화 및 문맥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관리감독자 → 회사 ◦ 산안법 제41조에 의거 고객응대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조치 의무는 '사업주' 임
<p>제 47 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분진작업 관련 설비를 설치, 이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유해·위험 방지 사항에 관한 계획서(이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2019. 12. 26 신설)</p> <p>② 건설업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착공하고자 할 경우 유해 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에 관하여 스스로 확인하고, 심사 대상인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p>	<p>제 47 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등) ① 회사는 시행령으로 정하는분진작업 관련 설비등을 설치, 이전, 변경하거나 시행령에서 정하는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유해·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적은 계획서(이하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2022.12.00 개정)</p> <p>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시행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이행에 관하여 스스로 확인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022.12.00 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어 명시 및 문맥 정리 -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으로 문구 정리 (법령과의 정합성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②항의 내용을 제①항으로 통합 - 산업안전보건법('22.8.18) 기준으로 정리 및 용어 통일

현 행 (7차)	개 정(안)	개정 사유
<p>제 48 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이하 이 조에서 “중대산업사고“라 한다)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합하다고 통보받기 전에는 관련 설비를 가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9. 12. 26 신설)</p> <p>③ 공정안전보고서에는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 평가서, 안전운전 계획, 비상조치계획, 그 밖에 공정상의 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포함하여야 한다.</p>	<p>제 48 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① 시행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합하다고 통보받기 전에는 관련 설비를 가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2.12.00 개정)</p> <p>③ 공정안전보고서에는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 평가서, 안전운전 계획, 비상조치계획, 그 밖에 공정상의 안전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022.12.00 개정)</p>	<p>-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으로 문구 정리 및 용어 통일 (법령과의 정합성 보완)</p>
<p>제 49 조 (공정안전보고서 이행 등) ① 관리감독자와 근로자는 심사를 받은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지켜야 한다. (2019. 12. 26 신설)</p> <p>② 사업장은 심사를 받은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p>	<p>제 49 조 (공정안전보고서 이행 등) ① 회사와 근로자는 심사를 받은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지켜야 한다. (2022.12.00 개정)</p> <p>② 회사는 심사를 받은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실제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이행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p>	<p>- 주어(이행주체) 명확화 및 문맥 정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 → 회사와 근로자 ☞ 산안법 제46조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 이행 의무는 ‘사업주와 근로자’ 임

현 행 (7차)	개 정(안)	개정 사유
<p>제 50 조 (안전보건진단) ① 안전보건진단은 자율진단과 명령진단으로 구분하고, 근로자 대표의 요구가 있는 경우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 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2019. 12. 26 신설)</p> <p>② 각 사업장은 안전보건에 관하여 객관적 평가 등이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 컨설팅 업체를 활용하여 자율진단을 할 수 있다.</p> <p>③ 회사는 고용노동부 지방청(또는 지청)으로부터 안전보건진단을 명령받은 경우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부터 진단을 받아야 한다. 근로자 대표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p> <p>④ 진단 기관으로부터 개선조치를 요구받았을 경우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는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준수 및 이행하여야 한다.</p>	<p>제 50 조 (안전보건진단) ① 고용노동부 장관이 추락·붕괴, 화재·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다고 판단하여 안전보건진단을 명한 경우, 회사는 안전보건진단 기관에 안전보건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2022.12.00 개정)</p> <p>② 회사는 안전보건진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한다. (2022.12.00 개정)</p> <p>③ 각 사업장은 필요시 안전보건진단기관을 통해 자율진단을 할 수 있다. (2022.12.00 개정)</p> <p>④ <삭제> (2022.12.00 삭제)</p>	<p>-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으로 문구 정리 및 용어 통일 (법령과의 정합성 보완)</p>
<p>제 51 조 (사업주의 작업중지)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대피시킬 수 있다. (2019. 12. 26 개정)</p> <p>② 도급사업 계약상대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다음 각 호의 사항 발생시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2019. 12. 26 신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업재해 발생시 2. 관련 법, 영 및 규칙을 위반한 경우 3. 수급업체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을 평가한 결과, 해당 작업 수행이 곤란할 경우 	<p>제 51 조 (사업주의 작업중지) ① 회사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022.12.00 개정)</p> <p>② 회사는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작업 또는 해당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2022.12.00 개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업재해 발생 시 2. 관련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위반한 경우 3. 수급업체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을 평가한 결과, 해당 작업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한 경우 	<p>- 주어(이행주체) 명확화,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으로 문구 정리 및 용어 통일 (법령과의 정합성 보완)</p> <p>◦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회사 ☞ 산안법 제51조 의거</p>

현 행 (7차)	개 정(안)	개정 사유
<p>제 52 조 (근로자의 작업중지) ① 모든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p> <p>② 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없이 각 사업장에 설치된 Safety Call 전화를 사용하여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사업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사업소장은 Safety Call로 신고한 근로자에게 지체없이 위험해소 조치결과를 알려야 한다. (2019. 12. 26 신설)</p>	<p>제 52 조 (근로자의 작업중지) ① 모든 근로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2022.12.00 개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소작업 장소에서 적절한 안전조치(작업발판, 안전난간 등) 가 이루어지지 않아 추락의 위험이 높은 경우 2. 비계, 거푸집 동바리 등 가설시설물의 설치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부적합한 자재가 사용된 경우 또는 토사, 구축물 등의 변형이 예상되어 붕괴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3. 가연성 또는 인화성 물질 취급장소에서 적절한 조치없이 화기 작업을 실시하여 화재 및 폭발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4. 유해·위험물질 취급설비의 고장 또는 변형으로 화학물질의 누출 위험이 있는 경우 5.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농도 측정을 하지 않거나 적정 공기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6. 전기 충전부에 대한 충분한 방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감전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7. 폭염과 한파 등 이상기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8. 기타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적절한 안전·보건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자 스스로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p>②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없이 Safety Call을 통해 안전담당부서 또는 사업소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사업소장은 신고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개선 권고사항 반영 - 근로자 작업중지 요청에 따른 불이익 금지 규정화 및 ◦ 작업중지 요청사항의 구체화 명시 등 -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기준 반영 ◦ 제17조(작업중지 요청제) 의거 - Safety Call 제도 현행화 반영 ◦ Safety Call 관리주체 : 사업소장 및 사업소 안전담당부서

현 행 (7차)	개 정(안)	개정 사유
<p>제 53 조 (경영진 안전보건 현장점검) ① 사장은 반기별 1회, 임원은 분기별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장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와 개선계획을 정부 주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19. 12. 26 신설)</p> <p>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해 연 1회 이상 이행점검을 하여야 한다. (2019. 12. 26 신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안전보건 추진계획 및 실적 2. 위험성평가 유해위험사항 개선조치 및 시설물 정기점검 3. 안전보건 교육훈련 4. 산업재해 원인조사 및 그 대책 수립·이행 5. 안전관계서류의 기록 및 보존 6. 기타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p>③ 안전점검·진단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관리감독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p>	<p>제 53 조 (경영진 안전보건 현장점검) ① 사장은 반기별 1회, 임원은 분기별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장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와 개선계획을 정부 주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19. 12. 26 신설)</p> <p>②,③항 <삭제> (2022.12.00 개정)</p>	<p>- 2~3항의 내용은 본 조와 무관 (현장점검과 조치에 관한 사항은 타 조항에 기 반영 중)</p>
<p>제 54 조 (안전보건 순회점검) ① 사업소 안전보건관리직 종사자는 별표1의 순회점검 기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 점검을 하여야 하며, 불안정한 행동이나 상태가 있을 때에는 안전지적서(별표 2)를 발부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안전지적서를 받은 부서는 즉시 해결책을 강구하여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안전 및 보건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의 결과 근로자의 불안정한 행동이 지적되었을 때에는 해당자에게 안전지적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안전담당부서는 이를 종합관리하고 교육에 활용할 수 있다.</p>	<p>제 54 조 (안전보건 순회점검) ① 사업소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별표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비 또는 작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순회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불안정한 상태나 불안정한 행동에 대해서는 안전지적서(별표2)를 발부하여야 한다. (2022.12.00 개정)</p> <p>② 제1항의 안전지적서를 받은 담당부서는 즉시 해결책을 강구하여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안전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의 결과 근로자의 불안정한 행동이 지적되었을 때에는 해당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에게 안전지적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안전담당부서는 이를 종합관리하여야 한다. (2022.12.00 개정)</p>	<p>- 주어(이행주체) 명확화 -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으로 문구 정리 (연결조항 명시), 용어 통일 및 문맥 정리 (법령과의 정합성 보완)</p> <p>◦ 사업소 안전보건관리직 종사자 → 사업소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p> <p>◦ 사업소: 안전보건담당부서</p>

현 행 (7차)	개 정(안)	개정 사유
<p>제 55 조 (작업전 안전보건 검토) ① 관리감독자는 작업원이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작업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p> <p>② 본사 및 사업소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는 직무권한에 의거 당해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여야 할 안전관리담당자를 임명할 수 있다. 다만, 작업의 형태를 고려하여 작업책임자를 안전관리담당자로 할 수 있다.</p> <p>③ 신작업안전시스템에서의 작업전 안전보건검토는 별도로 정한 “신작업안전시스템 운영세칙”에 따른다.</p>	<p>제 55 조 (작업 전 안전보건 검토) ① 관리감독자는 근로자가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작업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2022.12.00 개정)</p> <p>② <삭제> (2022.12.00 개정)</p> <p>③ 작업과 관련된 안전·보건 검토와 확인에 관한 세부사항은 안전 작업허가 운영 세칙 및 관련 절차서에 따른다. (2022.12.00 개정)</p>	<p>- 산업안전보건법 상 용어사용 ◦ 작업원 : 근로자</p> <p>- 신작업안전시스템 용어 삭제 및 하위문서(세칙) 문서명 변경 ◦ 신작업안전시스템 운영세칙 → 안전작업허가 운영 세칙</p>
<p>제 56 조 (작업안전보건수칙) ① 작업원이 작업수행 시 준수하여야 할 중요한 안전보건 사항을 작업안전보건수칙으로 정하고 배포·운영한다.</p> <p>② 작업원은 작업안전보건수칙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함으로써 안전사고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p> <p>③ 작업안전보건수칙 제·개정은 본사 안전보건주관부서장이 한다.</p>	<p>제 56 조 (작업안전보건수칙) ① 회사는 근로자가 작업 시 준수하여야 할 중요사항을 작업안전보건수칙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022.12.00 개정)</p> <p>② 근로자는 작업안전보건수칙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함으로써 안전사고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022.12.00 개정)</p> <p>③ 작업안전보건수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은 본사 안전보건주관부서에서 시행한다. (2022.12.00 개정)</p>	<p>- 산업안전보건법 상 용어사용 ◦ 작업원 : 근로자</p> <p>- 주어(이행주체) 명시 및 문맥정리</p>
<p>제 57 조 (표준 작업안전분석서 작성·운영) ① 관리감독자는 위험성평가 결과, 고위험으로 분류된 작업은 작업안전분석서(Job Safety Analysis)를 작성하고 안전부서의 승인을 받아 표준으로 등록하고 해당 작업시 활용하여야 한다.</p> <p>② 표준 작업안전분석서는 위험성평가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협력사 등 모든 근로자에게 공유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제 57 조 (표준 작업안전분석서 작성·운영) ① 관리감독자는 해당 작업에 참여하는 근로자와 함께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작업안전분석서(Job Safety Analysis)를 작성하고 부서장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22.12.00 개정)</p> <p>② 사업소 안전담당부서는 표준 작업안전분석서를 안전보건통합플랫폼에 등록·관리하여 협력사 및 근로자에게 공유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022.12.00 개정)</p>	<p>- 現 위험성평가 제도 반영 ◦ 위험성평가 시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참여가 필요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고용노동부 고시) 제6조 의거 ◦ 내부지침 및 절차서에 따라 위험성평가에 관한 승인은 해당부서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역할임</p>

현 행 (7차)	개 정(안)	개정 사유
<p>제 58 조 (안전작업 허가제도 운영) ① 공사 시공부서는 사업소 관할 구역내(장소에 상관없이 사업소의 지배 관리장소도 포함) 작업을 시행함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위험성평가, 안전조작, 작업허가서 수령 등의 안전작업허가 절차를 따라야 한다.</p> <p>② 제1항의 안전작업허가 세부 절차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작업안전시스템 운영세칙 및 운영절차서에 따른다.</p>	<p>제 58 조 (안전작업 허가제도 운영) ① 회사와 관계수급인은 사업소 관할 구역 내(사업소가 지배·관리하는 장소 포함) 작업을 시행함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작업계획 수립, 위험성평가, 안전·보건조치 시행 및 확인 등 안전작업허가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2022.12.00 개정)</p> <p>② 제1항의 안전작업 허가제도에 대한 세부사항은 안전작업허가 운영세칙 및 관련 절차서에 따른다. (2022.12.00 개정)</p>	<p>- 주어(이행주체) 명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허가제도는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에게도 해당됨 <p>- 신작업안전시스템 용어 삭제 및 하위문서(세칙) 문서명 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작업안전시스템 운영세칙 → 안전작업허가 운영 세칙
<p>제 60 조 (안전수칙위반) 사업소내 안전수칙을 위반한 근로자에게는 안전지적서를 발행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3. 위반사항이 심하고 개선 의지가 없을 경우 사업소장에게 보고후 퇴출 조치</p>	<p>제 60 조 (안전수칙 위반) 회사는 안전수칙을 위반한 근로자에게 안전지적서를 발행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다. (2022.12.00 개정)</p> <p>3. 위반사항이 심하고 개선 의지가 없을 경우 사업소장에게 보고 후 퇴출 조치</p>	<p>- 주어(이행주체) 명시</p>
<p>제 61 조 (안전장구 및 보호구) ① 근로자가 사용하는 안전장구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안전보호구 사용 및 관리기준』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② 작업원이 작업상 필요한 보호구는 관련 시행령(안전인증대상기계 등)이 정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검정품 또는 법 제84조 제2항 단서에 의한 검정이 면제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p>	<p>제 61 조 (안전장구 및 보호구) ① 근로자가 사용하는 안전장구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안전보호구 사용 및 관리기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② 안전장구 및 보호구는 관련 시행령(안전인증대상기계 등)에서 정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검정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법 제84조 2항에 따라 안전인증 면제대상인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022.12.00 개정)</p>	<p>-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으로 문구 및 문맥 정리 (법령과의 정합성 보완)</p>

현 행 (7차)	개 정(안)	개정 사유
<p>제 62 조 (유해·위험기구 양도 등의 제한) ①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거나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법 제80조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 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대여·설치·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제 62 조 (유해·위험기구 양도 등의 제한) ①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법 제80조 제1항의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은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대여·설치·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2.12.00 개정)</p> <p>②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 등으로서 시행령 제71조에서 정하는 것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자는 시행규칙 제100조 및 제101조에 따른 필요한 안전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2022.12.00 개정)</p>	<p>-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으로 문구 및 문맥 정리 (법령과의 정합성 보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령 → 시행령 ◦ 고용노동부령 → 시행규칙 ◦ 산안법 제81조에 의거하여 내용 보완
<p>제 63 조 (안전검사) ① 법 제93조 제 1항에서 정하는 기계·기구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된다.</p> <p>② 안전검사 기준에 관한 사항은 법·영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 63 조 (안전검사) ① 회사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로서 시행령 제78조에서 정하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2022.12.00 개정)</p> <p>② 안전검사 대상, 주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고시에 따른다. (2022.12.00 개정)</p>	<p>- 주어(이행주체) 명시</p> <p>-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으로 문구 및 문맥 정리 (법령과의 정합성 보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안법 제93조에 의거하여 내용 보완
<p>제 64 조 (차량안전운행) ① 회사 차량 관리부서장 및 작업 차량 관리 감독자는 차량의 점검정비 및 운전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차량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② 사업장 출입 차량은 소내 안전속도, 주차장 등 교통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p> <p>③ 차량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차량관리·운용에 대한 기준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 64 조 (차량 안전운행) ① 회사의 차량을 관리하는 부서장 및 관리 감독자는 해당차량의 점검정비 및 운전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안전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22.12.00 개정)</p> <p>② 사업장 내 출입하는 차량은 소내 안전속도 준수, 지정된 주행로 및 주차장 이용 등 교통안전에 관한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022.12.00 개정)</p> <p>③ 회사차량 관리 및 안전운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022.12.00 개정)</p>	<p>- 문맥 정리</p>

현 행 (7차)	개 정(안)	개정 사유
<p>제 65 조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의 수립) ① 각 사업장은 근로자로 하여금 밀폐공간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프로그램 총괄책임자로 하여금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각 사업장은 밀폐공간 프로그램을 최소 2년에 1회 이상 평가 후 필요한 내용을 수정하여 보완하고 해당 프로그램은 기록하여 보존한다.</p> <p>③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에는 밀폐공간의 위치, 형상, 유해위험요인 및 작업에 대한 수행요령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p>	<p>제 65 조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의 수립) ① 회사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022.12.00 개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방안 2. 밀폐공간 내 질식·중독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의 파악 및 관리 방안 3. 밀폐공간 작업 시 사전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확인 절차 4.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5. 그 밖에 밀폐공간 작업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p>② (현행유지)</p> <p>③ <삭제> (2022.12.00 개정)</p>	<p>-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으로 주어(이행주체) 명확화 및 문구, 문맥 정리 (법령과의 정합성 보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에 의거하여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 작성내용 명시 ◦ 제③항의 내용을 제①항으로 통합 ◦ 각 사업장 → 회사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에 따라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은 ‘사업주’의 의무임
<p>제 66 조 (비상조치계획) ① 각 사업장은 위험성평가 등에서 도출된 화재·폭발·누출·붕괴·지진·밀폐공간 등 중대재해 및 중대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대비,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비상사태별 시나리오와 대책을 포함한 비상조치계획을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p>	<p>제 66 조 (비상조치계획) ① 각 사업장은 위험성평가 등에서 도출된 화재·폭발·누출, 태풍·홍수·지진 등 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및 재해 상황에 대비하여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비상사태별 시나리오와 대책을 포함한 비상조치계획을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2022.12.00 개정)</p>	<p>- 문맥 정리</p>

현 행 (7차)	개 정(안)	개정 사유
<p>제 69 조 (대국민 이용시설 안전관리) ① 발전소 주변 주민, 견학자 등 다수의 국민이 우리 회사의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시설관리부서는 안전사고 예방, 재난 발생시 대응 등에 대한 시나리오별 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한다.</p> <p>② 재난 및 안전사고예방 안내서, 팜플렛, 안전표지, 안내방송, 안전교육 등을 시행하여 이용자가 숙지하여 스스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제 69 조 (대국민 이용시설 안전관리) ① 발전소 주변 주민, 견학자 등 다수의 국민이 우리 회사의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는 안전사고 예방, 재난 발생시 대응 등에 대한 시나리오별 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한다. (2022.12.00 개정)</p> <p>② 각 사업장은 재난 및 안전사고예방 안내서, 팜플렛, 안전표지, 안내방송, 안전교육 등을 통해 이용자가 숙지하고 스스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 주어(이행주체) 명시 및 문맥정리</p>
<p>제 70 조 (안전홍보활동 및 대국민 안전문화 향상) ① 안전관리부서 및 관리감독자는 외부인에게 안전홍보활동을 통하여 주의를 환기 시킴으로서 회사의 설비 또는 공사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외부인 사고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p>	<p>제 70 조 (안전문화 정착 및 확산) ① 회사는 재해 및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문화 정착 및 확산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그 대상에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지역사회,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등을 포함할 수 있다. (2022.12.00 개정)</p>	<p>- 주어(이행주체) 명확화 및 내용보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문화 활동 주체는 ‘사업주’ 이며 ◦ 안전문화 활동의 대상은 근로자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을 포함하여야 함
<p>제 71 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도급사업으로 인해 관계 수급인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업무 총괄을 위해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며, 도급사업을 수행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사업소장 등)를 말한다.</p>	<p>제 71 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회사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회사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2022.12.00 개정)</p>	<p>-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으로 문구 정리 (법령과의 정합성 보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안법 제62조 의거

현 행 (7차)	개 정(안)	개정 사유
<p>②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관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급업체 위험성평가 사항에 대한 지도 및 지원 2. 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의 중지 및 재개 3.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4. 법 제64조에 따른 협의체 구성·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교육 실시 확인 및 지원, 비상대응 조치 및 훈련, 위생시설 제공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5.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6. 관계 수급인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7. 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 감독 및 그 사용에 관한 수급인 간의 협의·조정 8. 안전인증대상기계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의 사용 여부 확인 	<p>②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관리하여야 한다. (2022.12.00 개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2. 중대재해 발생 또는 산업재해 발생위험 시 작업의 중지 3. 산안법 제64조에 따른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 협의체 구성·운영 나. 작업장 순회점검 다. 관계수급인의 안전보건교육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라. 관계수급인의 안전보건교육 실시 확인 마.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바. 관계수급인의 위생시설 설치 등을 위한 필요 장소의 제공 또는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사. 같은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 (2022.12.00 신설) 자. 사목에 따른 확인 결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혼재로 인하여 화재·폭발 등 시행령에서 정하는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등의 조정 (2022.12.00 신설) 차. 정기적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 (2022.12.00 개정)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 협의·조정 및 그 집행을 감독 5. 안전인증대상기계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의 사용 여부 확인 6.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7. 관계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시 시정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된 조항 추가 ☞ 관계수급인 작업시기·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확인 ☞ 관계수급인 혼재작업 관리 및 작업시기·내용 조정

현 행 (7차)	개 정(안)	개정 사유
<p>제 72 조 (도급사업 안전계약 특수조건 운영) ① 도급사업을 발주할 경우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계약사항에 반영하여야 한다. (2021. 02. 26 개정)</p> <p>② 도급사업 목적으로 운영되는 안전계약 특수조건은 별도 기준으로 운영한다. (2021. 02. 26 개정)</p>	<p>제 72 조 (도급사업 안전계약 특수조건 운영) ① 회사는 도급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도급사업 안전계약 특수조건과 관련 세칙 및 절차서를 계약사항에 반영하여야 한다. (2022.12.00 개정)</p> <p>② 도급사업 목적으로 운영되는 도급사업 안전계약 특수조건은 별도 기준으로 운영한다. (2022.12.00 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어 명시(이행주체) 및 문맥 정리 - 연결 사규 문서명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계약특수조건이 사업의 종류에 따라 1)도급사업 안전계약 특수조건, 2) 건설공사 안전계약특수조건으로 구분됨
<p>제 73 조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검토 및 안전수준 평가) ① 관리감독자는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으로 주어 운영을 하는 경우 사고예방을 위해 착공전 수급인으로부터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관리비 실행예산을 제출받아 검토하고 안전부서에 승인요청하여야 한다.</p> <p>② 안전관리자는 요청한 서류를 근거로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하고 해당 작업 수행 적격 여부를 판정한다. 부적합한 경우 개선 요청하고 적합할 경우에만 착공할 수 있다. 부적합사항이 지속될 경우에는 착공과 동시에 공사중지를 하여야 한다.</p> <p>③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평가 사항은 별도 운영기준에 따른다.</p> <p>④ 관리감독자는 제1항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한 이행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비 실행예산이 초과될 경우 안전관리자와 협의를 거쳐 추가 정산할 수 있다.</p>	<p>제 73 조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검토 및 안전수준 평가) ① 도급주관부서는 사업장(회사가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시행령에서 정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에 대하여 사고예방을 위해 착공 전 수급인으로부터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실행예산을 제출받아 안전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승인하여야 한다. (2022.12.00 개정)</p> <p>② 안전담당부서는 요청한 서류를 근거로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실시하고 해당 작업수행의 적격 여부를 판정하여야 하며, 부적합한 경우 개선을 요청하고 적합할 경우에만 착공을 승인할 수 있다. 착공 이후 부적합한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공사중지를 할 수 있다. (2022.12.00 개정)</p> <p>③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 운영기준에 따른다. (2022.12.00개정)</p> <p>④ 도급주관부서는 제1항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산업안전보건 관리비에 대한 이행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실행예산이 초과될 경우 안전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 추가 정산할 수 있다. (2022.12.00 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어 명시(이행주체) 명확화 및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으로 문구 정리 (법령과의 정합성 보완)

현 행 (7차)	개 정(안)	개정 사유
<p>제 74 조 (도급사업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동일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도급사업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매월 1회 이상 회의 개최 2. 별표 1에 따른 작업장 순회점검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건설사업소는 2일에 1회 이상 순회점검 나. 제2호 가목의 사업을 제외한 운영사업소는 1주일에 1회 이상 순회점검 3.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작업환경측정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의 운영과 대피 방법 등 훈련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토석 붕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6. 다음 각 목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건설사업소는 2개월에 1회 이상, 그 외 사업은 분기 1회 이상의 합동 안전보건점검의 실시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나. 수급인의 사업주 또는 대리인(현장소장) 다. 회사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 7. 다음 각 목의 위생시설의 설치 등의 협조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휴게시설 나. 세면·목욕시설 다. 세탁시설 라. 탈의시설 마. 수면시설 	<p>제 74 조 (도급사업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도급사업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22.12.00 개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별표1에 따른 작업장 순회점검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건설업 등은 2일에 1회 이상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의 경우 1주일에 1회 이상 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법 제29조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법 제29조 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 교육의 실시 확인 (2022.12.00 신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 방법 등 훈련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6. 위생시설 등 다음 각 목의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한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휴게시설 나. 세면·목욕시설 다. 세탁시설 라. 탈의시설 마. 수면시설 7. 같은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 (2022.12.00 신설) 	<p>-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으로 문구 정리 (법령과의 정합성 보완)</p>

현 행 (7차)	개 정(안)	개정 사유
	<p>8. 사목에 따른 확인 결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혼재로 인하여 화재·폭발 등 시행령에서 정하는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등의 조정 (2022.12.00 신설)</p> <p>9. 회사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p>	
<p>제 75 조 (안전경영위원회) ① 본사 안전보건주관부서장은 회사의 안전 보건경영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근로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안전경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회사 및 협력회사 대표, 회사 및 협력회사 근로자 대표, 전문가를 포함하여 18명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회사의 안전담당 본부장으로 한다. (2021. 02. 26 개정)</p> <p>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보고된 안전은 사내 인트라넷 게시, 게시판 게시, 그 밖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p> <p>④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반기 1회 시행하며,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KOSPO 안전경영위원회 운영 세칙』에 따른다</p>	<p>제 75 조 (안전경영위원회) ① 본사 안전보건주관부서장은 회사의 안전 보건경영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근로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안전경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회사 및 협력회사 대표, 회사 및 협력회사 근로자 대표, 전문가를 포함하여 18명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회사의 안전담당 본부장으로 한다.</p> <p>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보고된 안전에 대해 사내 인트라넷 게시, 게시판 게시, 그 밖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2022.12.00 개정)</p> <p>④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반기 1회 시행하며,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KOSPO 안전경영위원회 운영 세칙』에 따른다</p>	<p>- 문맥 정리</p>

현 행 (7차)	개 정(안)	개정 사유
<p>제 76 조 (사업주 협의체) ① 사업소장과 수급업체 현장소장으로 구성한다.</p> <p>② 사업주 협의체 회의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한다. 사업소장 또는 현장소장이 요청할 시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p> <p>③ 발주자인 회사가 회의의 소집권자가 된다.</p> <p>④ 사업주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작업의 시작시간 및 종료시간 2. 각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3. 재해발생 위험시의 대피방법 4. 합동안전점검 실시 및 결과에 따른 대책 수립 5.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6. 사내도급업체 간의 안전보건에 관한 협력방안 7. 위험성평가의 실시, 업무분장 및 시정조치 8. 잠재위험요인 발굴 및 대책 수립 9. 안전장치 및 시설에 관한 사항 10. 그 밖의 사내도급업체 근로자 전체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p>제 76 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① 회사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회사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회사 및 수급인 전원을 포함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단, 사업소장 또는 현장소장이 요청할 시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022.12.00 개정)</p> <p>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 (2022.12.00 개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작업의 시작시간 및 종료시간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4. 작업장에서의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회사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6. 그 밖의 관계수급인 근로자 전체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p>- 주어 명시(이행주체) 명확화 및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으로 문구 정리 (법령과의 정합성 보완)</p>
<p>제 77 조 (안전근로협의체)</p> <p>④ 위원장은 협의체에서 보고된 안전은 사내 인트라넷 게시, 게시판 게시, 그 밖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p>	<p>제 77 조 (안전근로협의체)</p> <p>④ 위원장은 협의체에서 보고된 안전에 대해 사내 인트라넷 게시, 게시판 게시, 그 밖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2022.12.00 개정)</p>	<p>- 문맥 정리</p>

현 행 (7차)	개 정(안)	개정 사유
<p>제 78 조 (건설공사 안전보건특기시방서 운영) ① 전부 도급사업인 건설공사를 발주할 경우 안전보건특기시방서를 계약사항에 반영하여야 한다.</p> <p>② 건설공사 목적으로 운영되는 안전보건특기시방서는 별도 기준에 따른다.</p>	<p>제 78 조 (건설공사 안전보건특기시방서 운영) ① <삭제> (2022.12.00 삭제)</p>	<p>- 현행화 (건설공사 안전계약 특수조건으로 변경)</p>
	<p>제 78 조의 2 (건설공사 안전계약 특수조건 운영) ① 회사는 건설공사 발주자로서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발주 건설공사 안전계약 특수조건과 관련 세칙 및 절차서를 계약사항에 반영하여야 한다. (2022.12.00 신설)</p> <p>② 발주 건설공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안전계약 특수조건은 별도 기준으로 운영한다. (2022.12.00 신설)</p>	<p>- 용어변경 및 문구정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계약특수조건이 사업의 종류에 따라 1)도급사업 안전계약 특수조건, 2) 건설공사 안전계약특수조건으로 구분됨
<p>제 79 조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회사는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1. 건설공사 계획단계 : 발주자는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p> <p>2. 건설공사 설계단계 : 발주자는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p> <p>3. 건설공사 시공단계 :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p> <p>④ 기본, 설계, 공사 안전보건대장 세부 사항은 별도 정하는 운영 기준에 따른다.</p>	<p>제 79 조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건설공사발주자 인 회사는 건설공사 발주 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22.12.00 개정)</p> <p>1. 건설공사 계획단계 : 발주자는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p> <p>2. 건설공사 설계단계 : 발주자는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p> <p>3. 건설공사 시공단계 :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p> <p>④ 기본, 설계, 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검토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정하는 운영 기준에 따른다. (2022.12.00 개정)</p>	<p>- 문맥 정리</p>

현 행 (7차)	개 정(안)	개정 사유
<p>제 80 조 (안전보건조정자) ①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할 경우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에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공사는 분리발주한 각 건설공사 금액의 합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한정한다.</p>	<p>제 80 조 (안전보건조정자) ① 건설공사발주자인 회사는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하고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에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한다. (2022.12.00 개정)</p> <p>②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는 각 건설공사의 금액의 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2022.12.00 개정)</p>	<p>- 문맥 정리</p>
	<p>제 80 조의 2 (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① 건설공사발주자인 회사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해서는 아니된다. (2022.12.00 신설)</p> <p>② 건설공사발주자인 회사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공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2022.12.00 신설)</p>	<p>-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명시된 건설공사발주자의 의무사항 (법령과의 정합성 보완)</p>
<p>제 81 조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p> <p>2. 발주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p>	<p>제 81 조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건설공사발주자인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공사가 지연되어 해당 건설공사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2022.12.00 개정)</p> <p>2.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p>	<p>-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으로 문구, 문맥 정리 (법령과의 정합성 보완)</p>

현 행 (7차)	개 정(안)	개정 사유
<p>제 82 조 (설계 변경의 요청) ① 건설공사도급인은 건설공사 중에 가설 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p> <p>②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공사중지 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변경 명령을 받은 건설공사도급인은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p> <p>③ 건설공사 관계수급인은 건설공사 중에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공사도급인은 적용이 불가능한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설계를 변경하거나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부터건설공사발주자는</p>	<p>제 82 조 (설계 변경의 요청) ①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 중에 시행령에서 정하는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건설공사발주자인 회사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2022.12.00 개정)</p> <p>②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공사중지 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변경 명령을 받은 건설공사도급인은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건설공사발주자인 회사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2022.12.00 개정)</p> <p>③ 건설공사의 관계수급인은 건설공사 중에 제1항에 따른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제1항에 따른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공사도급인은 그 요청받은 내용이 기술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반영하여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거나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2022.12.00 개정)</p> <p>④ 제1항부터건설공사발주자인 회사는 (2022.12.00 개정)</p>	<p>-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으로 문구, 문맥 정리 (법령과의 정합성 보완)</p>

현 행 (7차)	개 정(안)	개정 사유
<p>제 83 조 (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①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한다.</p> <p>②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p> <p>③ 관리감독자는 제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실행예산이 초과될 경우 안전관리자와 협의하고 초과된 비용을 정산할 수 있다.</p>	<p>제 83 조 (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① 건설공사 발주자인 회사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2022.12.00 개정)</p> <p>②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안전관리비’)을 동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건설공사의 규모 및 종류에 따른 안전관리비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동법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2022.12.00 개정)</p> <p>③ 공사주관부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실행예산이 초과될 경우 안전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 추가 정산할 수 있다. (2022.12.00 개정)</p>	<p>-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으로 이행주체 명확화 및 문구, 문맥 정리 (법령과의 정합성 보완)</p>
	<p>제 83 조의 2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① 시행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지정받은 전문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회사는 안전보건역량을 충분히 갖춘 기관과 계약하여야 한다. (2022.12.00 신설)</p> <p>②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하고, 건설공사도급인은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22.12.00 신설)</p>	<p>-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사항 반영 (법령과의 정합성 보완)</p>

현 행 (7차)	개 정(안)	개정 사유
<p>제 84 조 (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동수로 구성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이하 “노사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한 것으로 본다.</p> <p>② 노사협의체는 2개월 단위로 개최되어야 하며 심의·의결된 사항은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p>	<p>제 84 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운영) ① 시행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이하 ‘노사협의체’)를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한 것으로 본다. (2022.12.00 개정)</p> <p>② 노사협의체는 2개월마다 개최되어야 하며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기록·보존하여야 하고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2022.12.00 개정)</p>	<p>-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으로 문구, 문맥 정리 (법령과의 정합성 보완)</p>
<p>제 85 조 (건설현장 주변 공중의 안전확보) 건설공사 현장 주변 공중의 안전 확보를 위해 별표8의 점검표 내용을 바탕으로 분기별 안점점검을 실시하고, 주변시설 피해 및 현장 주변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즉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2021. 02. 26 신설)</p>	<p>제 85 조 (건설현장 주변 공중의 안전확보) 회사는 건설공사 현장 주변 공중의 안전 확보를 위해 별표8의 점검표 내용을 바탕으로 분기별 안점점검을 실시하고, 주변시설 피해 및 현장 주변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즉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2022.12.00 개정)</p>	<p>- 주어(이행주체) 명시</p>

현 행 (7차)	개 정(안)	개정 사유
<p>제 86 조 (유해물질 취급 및 관리)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련 산업 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해당 부서를 유해물질 취급부서로 지정한다.</p> <p>③ 해당 부서의 관리감독자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관계 근로자외의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키거나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p> <p>④ 회사는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기준 및 수칙을 작성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얻어 운영하며, 해당 근로자가 알기 쉽게 장소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p> <p>⑤ 해당 근로자는 회사에서 제정한 기준 및 안전보건수칙을 준수한다.</p>	<p>제 86 조 (유해물질 취급 및 관리) ①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사업소 해당부서를 유해물질 취급부서로 지정한다. (2022.12.00 개정)</p> <p>③ 해당 부서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관계 근로자 이외의 사람 출입을 금지시키고 그 위험에 관한 정보를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2022.12.00 개정)</p> <p>④ 회사는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기준 및 수칙을 작성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얻어 운영하여야 하며, 해당 근로자가 알기 쉽게 장소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2022.12.00 개정)</p> <p>⑤ 해당 근로자는 회사에서 정한 기준 및 안전보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022.12.00 개정)</p>	<p>- 주어(이행주체) 명시 및 문맥정리</p>
<p>제 87 조 (위험물질의 보관 및 사용)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 해당 관리감독자를 위험물 취급책임자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관리감독자는 위험물질을 작업장 외의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최소량만을 두어야 한다.</p>	<p>제 87 조 (위험물질의 보관 및 사용) ① 회사는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 해당 자격을 가진 자를 위험물 취급책임자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2022.12.00 개정)</p> <p>② 회사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에 규정된 위험물질을 작업장 외의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양만 두어야 한다. (2022.12.00 개정)</p>	<p>-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으로 문구, 문맥 정리 (법령과의 정합성 보완)</p>

현 행 (7차)	개 정(안)	개정 사유
<p>제 101 조 (사고발생 시 처리절차)</p> <p>④ 인적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규칙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한다.</p> <p>⑤ 사고조사가 마무리된 경우 재해자가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조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p>	<p>제 101 조 (사고발생 시 처리절차)</p> <p>④ 회사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행규칙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22.12.00 개정)</p> <p>⑤ 사고조사가 마무리된 경우 재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조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p>	<p>-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으로 문구, 문맥 정리 (법령과의 정합성 보완)</p>
<p>제 103 조 (안전사고 보고) ① 아차사고를 제외한 …………… 즉시 본사 안전관리 주관부서장에게 ……………</p> <p>② 본사 안전관리 주관부서장은 경영진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 103 조 (안전사고 보고) ① 아차사고를 제외한 …………… 즉시 본사 안전보건주관부서장에게 …………… (2022.12.00 개정)</p> <p>② 본사 안전보건주관부서장은 경영진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22.12.00 개정)</p>	<p>- 용어 통일</p>
<p>제 104 조 (안전사고 즉보) ① 안전사고 즉보는 본사 및 사업소 안전보건담당부서에 전자우편, 메신저 또는 FAX 등을 사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p>	<p>제 104 조 (안전사고 즉보) ① 안전사고 즉보는 본사 안전보건주관부서 및 사업소 안전담당부서에 전자우편, 메신저 또는 FAX 등을 사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2022.12.00 개정)</p>	<p>- 용어 통일 사업소 안전보건담당부서 → 사업소 안전담당부서</p>
<p>제 105 조 (안전사고 중간보고) ① 안전사고 중간보고는 본사 및 사업소 안전보건담당부서에 전자우편, 메신저 또는 FAX 등을 사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p>	<p>제 105 조 (안전사고 중간보고) ① 안전사고 중간보고는 본사 안전보건주관부서 및 사업소 안전담당부서에 전자우편, 메신저 또는 FAX 등을 사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2022.12.00 개정)</p>	<p>- 용어 통일 사업소 안전보건담당부서 → 사업소 안전담당부서</p>

현 행 (7차)	개 정(안)	개정 사유
<p>제 106 조 (안전사고 상보) ① 안전사고 상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본사 안전관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하고, 상보 후에 중대한 변동사항이 새로 인지되었을 경우에는 별도 공문으로 제출한다. (2021. 02. 26 개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대한 전기사고의 통보(상보) 2부 (적용대상 및 서식 : 전기사업법시행규칙에 따른다) 2. 안전사고상보 1부 【별표5】 3. 안전사고 조사보고서 1부 【별표6】 4. 전기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자 의견서 1부 【별표7】 5. 현장도면 각 2매 6. 사고현장사진 각 2매 7. 시체검안서 또는 진단서 1부 8. 경찰조서 사본 1부 9. 합의서 사본 1부 10. 안전교육 실적 사본 1부 11. 산업재해조사표 사본 1부 (기간내 미작성시 사고발생 30일 이내 공문 제출) 12. 기타 필요한 사항 각 1부 <p>② 상보는 보고된 모든 안전사고를 대상으로 하고 서식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 106 조 (안전사고 상보) ① 안전사고 상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본사 안전보건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하고, 상보 후에 중대한 변동사항이 새로 인지되었을 경우에는 별도 공문으로 제출한다. (2022.12.00 개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대한 전기사고의 통보(상보) 2부 (적용대상 및 서식 : 전기사업법시행규칙에 따른다) 2. 산업재해 상보 1부 【별표5】 3. 산업재해 조사보고서 1부 【별표6】 4. 전기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자 의견서 1부 【별표7】 5. 현장도면 각 2매 6. 사고현장 사진 각 2매 7. 시체검안서 또는 진단서 1부 8. 경찰조서 사본 1부 9. 합의서 사본 1부 10. 안전교육 실적 사본 1부 11. 산업재해조사표 사본 1부 (기간내 미작성시 사고발생 30일 이내 공문 제출) 12. 기타 필요한 사항 각 1부 <p>② 상보는 보고된 모든 안전사고를 대상으로 하고 별표5 서식에 따른다. (2022.12.00 개정)</p>	<p>- 용어 통일</p>

현 행 (7차)	개 정(안)	개정 사유
<p>제 107 조 (아차사고 등록·공유) ① 아차사고는 인적, 물적피해는 없으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로 관리되어야 하며 회사는 사례가 관련 시스템에 등록·공유되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p> <p>② 아차사고 사례는 안전부서 주관으로 사고조사를 통해 원인 파악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③ 관리감독자는 해당 위험을 개선조치하고 유사 위험이 제거될 수 있도록 전사 공유하여야 한다. 유사 위험을 보유한 해당 부서는 적극 개선조치하여야 한다.</p> <p>④ 아차사고 사례는 교육 자료 활용, 위험발굴·개선 등 재해예방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경우로서 등록자 및 조치자에 대해서는 회사는 반드시 포상한다.</p>	<p>제 107 조 (아차사고 공유 및 활용) ① 아차사고는 인적, 물적피해는 없으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로 회사는 해당 사고를 임직원 및 관계수급인에게 공유하여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022.12.00 개정)</p> <p>② 안전담당부서는 아차사고 사례에 대해 반드시 사고조사를 실시하여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유사한 위험을 보유한 사업소는 이를 제거할 수 있도록 적극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2022.12.00 개정)</p> <p>③ 회사는 아차사고 사례를 교육자료, 위험발굴·개선 등 재해예방 활동에 적극 활용하고 신고자 및 조치자에 대해서 포상할 수 있다. (2022.12.00 개정)</p>	<p>- 문맥 정리</p>
<p>제 108 조 (안전사고의 조사) ① 회사는 아차사고를 포함한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서 사고조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하며, 조사 자료는 재발방지 및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분석자료로 활용되어야 한다.</p> <p>② 안전사고의 조사는 본사 및 사업소의 안전관리담당부서에서 담당하고, 필요시 ……………</p> <p>③ 안전사고 조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사 안전관리 담당부서의 주관으로 ……………</p>	<p>제 108 조 (안전사고의 조사) ① 회사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서 사고조사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 자료는 재발방지 및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분석자료로 활용되어야 한다. (2022.12.00 개정)</p> <p>② 안전사고의 조사는 본사 안전보건주관부서 및 사업소 안전담당부서에서 실시하고, 필요시 …………… (2022.12.00 개정)</p> <p>③ 안전사고 조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사 안전보건 주관부서의 주관으로 …………… (2022.12.00 개정)</p>	<p>- 문맥 정리</p>
<p>제 110 조 (실적보고) 사업소장은 본사 안전관리주관부서장이 재해통계 및 안전활동 실적을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p>	<p>제 110 조 (실적보고) 사업소장은 본사 안전보건주관부서장이 재해통계 및 안전활동 실적을 요청하는 경우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022.12.00 개정)</p>	<p>- 용어 통일 및 문맥 정리</p>

현 행 (7차)	개 정(안)	개정 사유
<p>제 111 조 (대관보고)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관계법령이 정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행정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p>	<p>제 111 조 (대관보고) 회사는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관계법령이 정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부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2022.12.00 개정)</p>	<p>- 주어(이행주체) 명시 및 문맥 정리</p>
<p>제 112 조 (포상) ① 회사는 안전보건업무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사업소 또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포상기준을 수립하여 포상한다.</p> <p>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포상 추천자</p> <p>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안전보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내 및 협력사 근로자에게 별도 기준에서 정한 마일리지를 합산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p>	<p>제 112 조 (포상) ① 회사는 안전·보건 업무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사업소 또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포상기준을 수립하여 포상할 수 있다. (2022.12.00 삭제)</p> <p>3.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포상을 추천한 자 (2022.12.00 개정)</p> <p>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안전보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내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에게 별도 기준에서 정한 마일리지를 합산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022.12.00 개정)</p>	<p>- 문맥 정리</p>
<p>제 113 조 (징계 처분) ① 본사 및 사업소 안전담당부서는 안전사고 조사보고서</p> <p>② 본사 및 사업소 인사담당부서는 제1항에 의한 인사위원회 회부 요청시 관련 규정에 의거</p> <p>③ 본사 및 사업소 안전보건담당부서의 간부는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위반한 자에</p> <p>1. 작업허가서에 명시되지 않은 작업을 지시하였거나 시행했을 경우 (작업허가서 발행이 곤란한 긴급 상황인 경우 설비부서장 등 결정권자의 승인을 득하고 신 작업안전시스템 운영지침 제6조 긴급작업 절차에 따라 시행한 경우 제외)</p>	<p>제 113 조 (징계 처분) ① 본사 안전보건주관부서 및 사업소 안전담당부서는 안전사고 조사보고서 (2022.12.00 개정)</p> <p>② 본사 및 사업소 인사담당부서는 제1항에 의한 인사위원회 회부 요청 시 관련 규정에 의거 (2022.12.00 개정)</p> <p>③ 본사 안전보건주관부서 및 사업소 안전담당부서의 간부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위반한 자에 (2022.12.00 개정)</p> <p>1. 작업허가서에 명시되지 않은 작업을 지시하였거나 시행했을 경우 (작업허가서 발행이 곤란한 긴급 상황인 경우 설비부서장 등 결정권자의 승인을 득하고 안전작업허가 운영 세칙 제6조 긴급작업 허가 절차에 따라 시행한 경우 제외) (2022.12.00 개정)</p>	<p>- 용어 통일 및 문맥 정리</p>

현 행 (7차)	개 정(안)	개정 사유																													
<p>제 115 조 (무재해 운동 추진) ① 본사 및 사업소 안전보건담당부서는 근로자의 자율적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나아가 안전사고를 근절하기 위하여 무재해 운동을 추진할 수 있다.</p>	<p>제 115 조 (무재해 운동 추진) ① 본사 안전보건주관부서 및 사업소 안전담당부서는 근로자의 자율적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나아가 안전사고를 근절하기 위하여 무재해 운동을 추진할 수 있다. (2022.12.00 개정)</p>	<p>- 용어 통일 및 문맥 정리</p>																													
<p>제 116 조 (신작업안전시스템) 이 규정 중 신작업안전시스템 관련 세부사항은 신작업안전시스템 운영세칙에 따른다.</p>	<p>제 116 조 (안전작업허가 운영 세칙) 작업 수행 중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조치되어야 할 안전관리 절차 및 통제에 관한 세부사항은 안전작업허가 운영 세칙 및 관련 절차서에 따른다. (2022.12.00 개정)</p>	<p>- 사내제도 용어 현행화 (신작업안전시스템 용어 삭제) 및 하위문서(세칙) 문서명 변경 ◦ 신작업안전시스템 운영세칙 → 안전작업허가 운영 세칙</p>																													
<p>제 117 조 (보칙)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노사협의로 따로 정한다.</p>	<p>제 117 조 (보칙)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노사간 협의로 따로 정한다. (2022.12.00 개정)</p>																														
<p>(별표 1) 안전보건관리직 종사자 순회점검 기준</p> <p>(별표 1) 안전보건관리직 종사자 순회점검 기준</p> <p style="text-align: center;"><u>안전보건 순회점검 기준</u></p> <table border="1" data-bbox="125 1107 866 1294"> <thead> <tr> <th>구</th> <th>분</th> <th>도급 형태</th> <th>점검 주기</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td> <td rowspan="2"></td> <td>전부 도급(건설)</td> <td>2일 1회 이상</td> </tr> <tr> <td>일부 도급</td> <td>1주 1회 이상</td> </tr> <tr> <td>안전보건관리자</td> <td></td> <td>전부 또는 일부 도급</td> <td>매일 1회 이상</td> </tr> <tr> <td>관리감독자</td> <td></td> <td>전부 또는 일부 도급</td> <td>매일 1회 이상</td> </tr> </tbody> </table> <p>○ 상기 표에 관계없이 중요공사, 휴전공사, 야간공사시(심야작업 포함)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p>	구	분	도급 형태	점검 주기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전부 도급(건설)	2일 1회 이상	일부 도급	1주 1회 이상	안전보건관리자		전부 또는 일부 도급	매일 1회 이상	관리감독자		전부 또는 일부 도급	매일 1회 이상	<p>(별표 1) 안전보건관리직 종사자 순회점검 기준</p> <p style="text-align: center;"><u>안전보건 순회점검 기준</u></p> <table border="1" data-bbox="1162 1107 1547 1211"> <thead> <tr> <th>구</th> <th>분</th> <th>사업소 점검 주기</th> <th>활동 안전·보건점검</th> </tr> </thead> <tbody> <tr> <td>안전보건총괄책임자</td> <td></td> <td>주 1회 이상 (건설업 등¹⁾인 경우 2일에 1회 이상)</td> <td rowspan="2">분기별 1회 이상 (건설업 등²⁾인 경우 2개월에 1회)</td> </tr> <tr> <td>안전보건관리책임자</td> <td></td> <td>-</td> </tr> </tbody> </table> <p>○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현장점검 주기는 일 1회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p> <p>1) 건설업 / 제조업 / 도목업 / 도목업 / 석채, 광채 및 기타 인체물 출원업 / 용역 및 기타 오디오물 출원업 /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채굴업</p> <p>2) 건설업 / 석채 및 보트 건조업</p> <p>※ 건설현장에서 다수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있는 경우, 각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2일에 1회 이상 적절할 순회점검(현장 주요인식, 설비 등) 파악 중임을 시행하여야 하고, 발주자의 안전보건조치(문제적업 파악 중심)도 함께할 수 있다.</p> <p>※ 상기 표에 관계없이 중요공사, 휴전공사, 야간공사시(심야작업 포함)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p>	구	분	사업소 점검 주기	활동 안전·보건점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주 1회 이상 (건설업 등 ¹⁾ 인 경우 2일에 1회 이상)	분기별 1회 이상 (건설업 등 ²⁾ 인 경우 2개월에 1회)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p>-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으로 문구, 문맥 정리 (법령과의 정합성 보완)</p>
구	분	도급 형태	점검 주기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전부 도급(건설)	2일 1회 이상																												
		일부 도급	1주 1회 이상																												
안전보건관리자		전부 또는 일부 도급	매일 1회 이상																												
관리감독자		전부 또는 일부 도급	매일 1회 이상																												
구	분	사업소 점검 주기	활동 안전·보건점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주 1회 이상 (건설업 등 ¹⁾ 인 경우 2일에 1회 이상)	분기별 1회 이상 (건설업 등 ²⁾ 인 경우 2개월에 1회)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현 행 (7차)	개 정(안)	개정 사유
----------	--------	-------

--	--	--

	<p>(별표 4의 2) 산업재해 중간보고 양식</p> <p style="font-size: small;">(별표 4의 2) 산업재해 중간보고 양식</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style="text-align: center;">**발진 **외력 ***** **산업재해 중간보고</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x-small;">~**.*.**(*) ***** ***(010,****,****)~</p> <p>◇ **(**) **,**분경 **발진본부 *****에서 *****과업 중 *****가 발생한다 관련 동향을 보고드립니다</p> <p>□ 사고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 시 : **(**) (**) **,**분경 ○ 장 소 : **발진본부 ○ 재 해 자 : **(**세, **** 소속 (**노종)) ○ 사고경위 : ***** ○ 사고원인 : *****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 5px 0;"> <tr>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사고발생 경위</th> </tr> <tr> <td style="width:50%; text-align: center;">사진1</td> <td style="width:50%; text-align: center;">사진2</td> </tr> </table> <p>□ 조치경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 **,**) ***** ○ (**일 **,**) ***** ○ (**일 **,**) ***** ○ (**일 **,**) ***** <p>□ 재발방지대책</p> <p>□ 양우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사고조사 대책 회의 계획 </div>	사고발생 경위		사진1	사진2	<p>- 사용양식 현행화</p>
사고발생 경위						
사진1	사진2					

	<p>(별표 5) 안전사고 상보</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table border="1" style="width:48%;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안전사고 상보(수급인/일반인)</th> </tr> <tr> <td style="width:15%;">사고일시</td> <td>년 월 일(요일) 시 분 날제 :</td> </tr> <tr> <td>발생장소</td> <td></td> </tr> <tr> <td>사고개요</td> <td></td> </tr> <tr> <td>사고종류</td> <td>1. 감전 2. 추락 3. 낙하 4. 기타</td> </tr> <tr> <td>계약명</td> <td></td> </tr> <tr> <td>공사명</td> <td></td> </tr> <tr> <td>구 분</td> <td>시공사 : 하수급인 : 일반인 :</td> </tr> <tr> <td>피해상황</td> <td>1. 인명피해(사망 명, 부상 명) 2. 재산피해 원천</td> </tr> <tr> <td>재해과 인격사항</td> <td>성명 : 성별 : 연령</td> </tr> <tr> <td></td> <td>주소 : 소속 : </td> </tr> <tr> <td>재해경도</td> <td></td> </tr> <tr> <td>재해과 조치사항</td> <td></td> </tr> <tr> <td>붙임서류</td> <td>(예시) 1. 안전사고 조사보고서 1부 2. 전기안전관리자 의견서 1부 3. 안전관리자 의견서 1부 4. 현장도면 2부 5. 현장사진 1부 6. 진단서 1부 등</td> </tr> <tr> <td colspan="2">위와 같이 안전사고에 대하여 보고합니다.</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td> <td style="text-align: center;">안전담당부서장 (인)</td> </tr> </table> <table border="1" style="width:48%;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안전사고 상보(직원)</th> </tr> <tr> <td style="width:15%;">사고일시</td> <td>년 월 일(요일) 시 분 날제 :</td> </tr> <tr> <td>발생장소</td> <td></td> </tr> <tr> <td>사고개요</td> <td></td> </tr> <tr> <td>사고종류</td> <td>1. 감전 2. 추락 3. 낙하 4. 기타</td> </tr> <tr> <td>피해상황</td> <td>1. 인명피해(사망 명, 부상 명) 2. 재산피해 원천</td> </tr> <tr> <td>피해과 인격사항</td> <td>성명 : 성별 : 연령</td> </tr> <tr> <td></td> <td>주소 : 소속 : </td> </tr> <tr> <td>재해경도</td> <td></td> </tr> <tr> <td>피해과 조치사항</td> <td></td> </tr> <tr> <td>붙임서류</td> <td>(예시) 1. 안전사고 조사보고서 1부 2. 전기안전관리자 의견서 1부 3. 안전관리자 의견서 1부 4. 현장도면 2부 5. 현장사진 1부 6. 진단서 1부 등</td> </tr> <tr> <td colspan="2">위와 같이 안전사고에 대하여 보고합니다.</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td> <td style="text-align: center;">안전담당부서장 (인)</td> </tr> </table> </div>	안전사고 상보(수급인/일반인)		사고일시	년 월 일(요일) 시 분 날제 :	발생장소		사고개요		사고종류	1. 감전 2. 추락 3. 낙하 4. 기타	계약명		공사명		구 분	시공사 : 하수급인 : 일반인 :	피해상황	1. 인명피해(사망 명, 부상 명) 2. 재산피해 원천	재해과 인격사항	성명 : 성별 : 연령		주소 : 소속 :	재해경도		재해과 조치사항		붙임서류	(예시) 1. 안전사고 조사보고서 1부 2. 전기안전관리자 의견서 1부 3. 안전관리자 의견서 1부 4. 현장도면 2부 5. 현장사진 1부 6. 진단서 1부 등	위와 같이 안전사고에 대하여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안전담당부서장 (인)	안전사고 상보(직원)		사고일시	년 월 일(요일) 시 분 날제 :	발생장소		사고개요		사고종류	1. 감전 2. 추락 3. 낙하 4. 기타	피해상황	1. 인명피해(사망 명, 부상 명) 2. 재산피해 원천	피해과 인격사항	성명 : 성별 : 연령		주소 : 소속 :	재해경도		피해과 조치사항		붙임서류	(예시) 1. 안전사고 조사보고서 1부 2. 전기안전관리자 의견서 1부 3. 안전관리자 의견서 1부 4. 현장도면 2부 5. 현장사진 1부 6. 진단서 1부 등	위와 같이 안전사고에 대하여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안전담당부서장 (인)	<p>(별표 5) 산업재해 상보 양식</p> <p style="font-size: x-small;">(별표 5) 산업재해 상보 양식</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산업재해 상보</th> </tr> <tr> <td style="width:15%;">사고일시</td> <td>년 월 일(요일) 시 분 날제 :</td> </tr> <tr> <td>발생장소</td> <td></td> </tr> <tr> <td>사고개요</td> <td></td> </tr> <tr> <td>사고종류</td> <td>1. 감전 2. 추락 3. 낙하 4. 기타</td> </tr> <tr> <td>계약명</td> <td></td> </tr> <tr> <td>공사명</td> <td></td> </tr> <tr> <td>구 분</td> <td>시공사 : 하수급인 : 일반인 :</td> </tr> <tr> <td>피해상황</td> <td>1. 인명피해 (사망 명, 부상 명) 2. 재산피해 원천</td> </tr> <tr> <td>재해과 인격사항</td> <td>성명 : 성별 : 연령</td> </tr> <tr> <td></td> <td>주소 : 소속 : </td> </tr> <tr> <td>재해경도</td> <td></td> </tr> <tr> <td>재해과 조치사항</td> <td></td> </tr> <tr> <td>붙임서류</td> <td>(예시) 1. 안전사고 조사보고서 1부 2. 전기안전관리자 의견서 1부 3. 안전관리자 의견서 1부 4. 현장도면 2부 5. 현장사진 1부 6. 진단서 1부 등</td> </tr> <tr> <td colspan="2">위와 같이 안전사고에 대하여 보고합니다.</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td> <td style="text-align: center;">안전담당부서장 (인)</td> </tr> </table>	산업재해 상보		사고일시	년 월 일(요일) 시 분 날제 :	발생장소		사고개요		사고종류	1. 감전 2. 추락 3. 낙하 4. 기타	계약명		공사명		구 분	시공사 : 하수급인 : 일반인 :	피해상황	1. 인명피해 (사망 명, 부상 명) 2. 재산피해 원천	재해과 인격사항	성명 : 성별 : 연령		주소 : 소속 :	재해경도		재해과 조치사항		붙임서류	(예시) 1. 안전사고 조사보고서 1부 2. 전기안전관리자 의견서 1부 3. 안전관리자 의견서 1부 4. 현장도면 2부 5. 현장사진 1부 6. 진단서 1부 등	위와 같이 안전사고에 대하여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안전담당부서장 (인)	<p>- 사용양식 현행화</p>
안전사고 상보(수급인/일반인)																																																																																													
사고일시	년 월 일(요일) 시 분 날제 :																																																																																												
발생장소																																																																																													
사고개요																																																																																													
사고종류	1. 감전 2. 추락 3. 낙하 4. 기타																																																																																												
계약명																																																																																													
공사명																																																																																													
구 분	시공사 : 하수급인 : 일반인 :																																																																																												
피해상황	1. 인명피해(사망 명, 부상 명) 2. 재산피해 원천																																																																																												
재해과 인격사항	성명 : 성별 : 연령																																																																																												
	주소 : 소속 :																																																																																												
재해경도																																																																																													
재해과 조치사항																																																																																													
붙임서류	(예시) 1. 안전사고 조사보고서 1부 2. 전기안전관리자 의견서 1부 3. 안전관리자 의견서 1부 4. 현장도면 2부 5. 현장사진 1부 6. 진단서 1부 등																																																																																												
위와 같이 안전사고에 대하여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안전담당부서장 (인)																																																																																												
안전사고 상보(직원)																																																																																													
사고일시	년 월 일(요일) 시 분 날제 :																																																																																												
발생장소																																																																																													
사고개요																																																																																													
사고종류	1. 감전 2. 추락 3. 낙하 4. 기타																																																																																												
피해상황	1. 인명피해(사망 명, 부상 명) 2. 재산피해 원천																																																																																												
피해과 인격사항	성명 : 성별 : 연령																																																																																												
	주소 : 소속 :																																																																																												
재해경도																																																																																													
피해과 조치사항																																																																																													
붙임서류	(예시) 1. 안전사고 조사보고서 1부 2. 전기안전관리자 의견서 1부 3. 안전관리자 의견서 1부 4. 현장도면 2부 5. 현장사진 1부 6. 진단서 1부 등																																																																																												
위와 같이 안전사고에 대하여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안전담당부서장 (인)																																																																																												
산업재해 상보																																																																																													
사고일시	년 월 일(요일) 시 분 날제 :																																																																																												
발생장소																																																																																													
사고개요																																																																																													
사고종류	1. 감전 2. 추락 3. 낙하 4. 기타																																																																																												
계약명																																																																																													
공사명																																																																																													
구 분	시공사 : 하수급인 : 일반인 :																																																																																												
피해상황	1. 인명피해 (사망 명, 부상 명) 2. 재산피해 원천																																																																																												
재해과 인격사항	성명 : 성별 : 연령																																																																																												
	주소 : 소속 :																																																																																												
재해경도																																																																																													
재해과 조치사항																																																																																													
붙임서류	(예시) 1. 안전사고 조사보고서 1부 2. 전기안전관리자 의견서 1부 3. 안전관리자 의견서 1부 4. 현장도면 2부 5. 현장사진 1부 6. 진단서 1부 등																																																																																												
위와 같이 안전사고에 대하여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안전담당부서장 (인)																																																																																												

현행 (7차)

(별표 6) 안전사고 조사보고서

별표 6 안전사고 조사보고서

안전사고 조사보고서(직원)

【공사(직업)명 : 1】

00년 00월 00일

조사대상 : (인) 안전보안관리책임자 : (인)

직책	성명	직명	직책	성명	직명

000 사업소

작성일자 : 000

1. 사고원인서 : 년 월 일 (요일) 시간 : 날짜
2. 사고장소 :
3. 피해상황 :
 - 인적피해(사망/부상) 및 정도
 - 경제적 피해
4. 피해자 인적사항

성명	소속
성명	직명
연성	주민번호
주소	
5. 재발방지 대책 및 부회

구분	내용	비고
장해지역 및 부회		
안전관리		
장해개선		
비상연 및 보강		
6. 발생자료

일시(연/월)	장소(비/내/외)	행위(작업/유동)	장기(계량/정확)	비고
일시(연/월)	장소(비/내/외)	행위(작업/유동)	장기(계량/정확)	비고
일시(연/월)	장소(비/내/외)	행위(작업/유동)	장기(계량/정확)	비고
7. 조치 및 진행상황
8. 재발방지 대책
 - 가. 적용현황
 - 나. 순회현황
 - 다. 안전관리(내/외) 측면
 - 라. 통계관리(성/별) 측면

9. 문제점
10. 재발방지대책
11. 종합의견(원고사 재해자 및 관리자의 설명 인사위원회 회부여부 명시)
12. 본사자
 - 조사 및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 조사 및 회계 : (서명 또는 인)
 - 안전담당부서장 : (서명 또는 인)

붙임 1. 피해자 진술서
2. 목격자 진술서
3. 사고조사도면 및 사진 1부,
4. 사고 상황도 1부,
5. 기타 필요한 사항 1부.

작성일자 : 000

안전사고 조사보고서(수급인/일반인)

【공사(직업)명 : 1】

00년 00월 00일

조사대상 : (인) 안전보안관리책임자 : (인)

직책	성명	직명	직책	성명	직명

000 사업소

작성일자 : 000

1. 피해사항 : 유, 무
2. 사고원인서 : 년 월 일 (요일) 시간 :
3. 사고장소
4. 피해상황
 - 인적피해
 - 경제적 피해
5. 피해자 인적사항

성명	소속
성명	직명
연성	주민번호
주소	
6. 재발방지 대책

구분	내용	비고
장해지역 및 부회		
안전관리		
장해개선		
비상연 및 보강		
7. 재발방지 대책

구분	내용	비고
장해지역 및 부회		
안전관리		
장해개선		
비상연 및 보강		
8. 조치 및 진행상황
9. 문제점
10. 재발방지대책
11. 사고현황
 - 가. 적용현황
 - 나. 순회현황
 - 다. 안전관리(내/외) 측면
 - 라. 통계관리(성/별) 측면
12. 문제점
13. 재발방지 대책
14. 종합의견(원고사 재해자 및 관리자의 설명 인사위원회 회부여부 명시)
15. 시공(감독)부서 관련자
 - 부서장 : (서명 또는 인)
 - 차장 : (서명 또는 인)
 - 담당 : (서명 또는 인)
16. 본사자
 - 조사 및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 조사 및 회계 : (서명 또는 인)
 - 안전담당부서장 : (서명 또는 인)

붙임 1. 피해자 진술서 1부,
2. 목격자 진술서 1부,
3. 사고조사도면 및 사진 1부,
4. 사고 상황도 1부,
5. 기타 필요한 사항 1부.

작성일자 : 000

8. 분석자료
 - 가. 적용법 또는 적용규칙 :
 - 나. 적용목적 :
 - 다. 적용관련 총괄사항 :
 - 라. 안전관리(내/외) 및 현장관리 :
 - 마. 관리(내/외) 중재현황 :
 - 바. 관리(내/외) 중재현황 :
 - 사. 복공일 :
 - 아. 중재절차 :
 - 자. 사고관련 책임인원
9. 발생자료

일시(연/월)	장소(비/내/외)	행위(작업/유동)	장기(계량/정확)	비고
일시(연/월)	장소(비/내/외)	행위(작업/유동)	장기(계량/정확)	비고
일시(연/월)	장소(비/내/외)	행위(작업/유동)	장기(계량/정확)	비고

개정(안)

(별표 6) 산업재해 조사보고서 양식

산업재해 조사보고서

【공사(직업)명 : 1】

00년 00월 00일

조사대상 : (인) 안전보안관리책임자 : (인)

직책	성명	직명	직책	성명	직명

000 사업소

작성일자 : 000

1. 사고원인서 : 년 월 일 (요일) 시간 : 날짜
2. 사고장소 :
3. 피해상황 :
 - 인적피해 (중/중상/부상 정도)
 - 경제적 피해
4. 피해자 인적사항

성명	소속
성명	직명
연성	주민번호
주소	
5. 재발방지 대책 및 부회

구분	내용	비고
장해지역 및 부회		
안전관리		
장해개선		
비상연 및 보강		
6. 발생자료

일시(연/월)	장소(비/내/외)	행위(작업/유동)	장기(계량/정확)	비고
일시(연/월)	장소(비/내/외)	행위(작업/유동)	장기(계량/정확)	비고
일시(연/월)	장소(비/내/외)	행위(작업/유동)	장기(계량/정확)	비고
7. 조치 및 진행상황
8. 재발방지 대책
 - 가. 적용현황
 - 나. 순회현황
 - 다. 안전관리(내/외) 측면
 - 라. 통계관리(성/별) 측면

붙임 1. 피해자 진술서
2. 목격자 진술서
3. 사고조사도면 및 사진 1부,
4. 사고 상황도 1부,
5. 기타 필요한 사항 1부.

작성일자 : 000

6. 목적지, 발발지 정보

목적지/발발지	목적지	발발지
목적지/발발지	목적지	발발지
8. 기타 조사 사항
 - 고려사항(내/외, 작업의 계절성, 안전행위(내/외) 등 관행사항 작성여부, 재해의 고위험/저위험, 안전행위(내/외) 여부
10. 사고현황 안전조사(사망/사상/중상/중상/부상)

구분	성명	직명	주민번호	주소
11. 사고발생원인분석
13. 발생자료

일시(연/월)	장소(비/내/외)	행위(작업/유동)	장기(계량/정확)	비고
일시(연/월)	장소(비/내/외)	행위(작업/유동)	장기(계량/정확)	비고
일시(연/월)	장소(비/내/외)	행위(작업/유동)	장기(계량/정확)	비고

12. 근본원인분석
 - 직접원인에 대하여 다음 "5 Why" 원인을 작성

원인? 1	(내)
원인? 2	(내)
원인? 3	(내)
원인? 4	(내)
원인? 5	(내)

근본원인 : (내)

※ 작성방법 : 직접원인(발생) 후 5Why 분석을 통해 최종적인 근본원인 도출
13. 개선대책 담당부서

구분	담당부서	성명	직명	연성	주소
14. 재발방지대책

재발방지대책	담당부서	담당자(성명)	조치현황

근본인과 함께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였습니까? 해당없음 예 아니오

※ 작성방법 :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한 대책 → 중간기 대책 → 개선완료 후 → 개선완료 후
15. 사고사태(내/외)에의
16. 재해자의 현황

성명	연성	직명	주소
17. 종합의견 (원고사 재해자 및 관리자의 설명 인사위원회 회부여부 명시)
18. 본사자
 - 조사 및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 조사 및 회계 : (서명 또는 인)
 - 안전담당부서장 : (서명 또는 인)

붙임 1. 피해자 진술서
2. 목격자 진술서
3. 사고조사도면 및 사진 1부,
4. 사고 상황도 1부,
5. 기타 필요한 사항 1부.

작성일자 : 000

18. 개선대책 담당부서

구분	담당부서	성명	직명	연성	주소
18. [붙임 1] 재해자 진술서

소속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성	주소

(사고 발생 원인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작성(내/외) (내/외, 연성, 주소, 직명, 연락처, 기타))

회 내용 내용은 사실과 다를 수 있음
년 월 일 (인)
18. [붙임 2] 목격자 진술서

소속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내)주소

년 월 일 시 분

회 내용 내용은 사실과 다를 수 있음
년 월 일 (인)

개정 사유

- 사용양식 현행화